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 수사 및 재판 상황과 기업의 대응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강사소개 | 주요경력



- 1995. - 전주지검 검사 임용
- 1995. - 2009. 서울, 부산, 대전 등 외사, 강력, 조세, 해양 등 형사부 검사
- 2009. - 2015. 광주, 수원公安부장, 대검公安3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 2015. - 2018. 흥성지청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 2018.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 2022. 2. - 서울북부지검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 2022. 4. -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

목차

- 0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0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현황 및 법률적 쟁점
- 03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 04 민·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 05 결론 : '안전은 종합예술'

※ Q&A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



≥



헌법상 생명권 → 근로자 안전권

● 당신은 좋은 기업인(CEO)입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실현
- ✓ 일반 시민의 생명·안전권 확보

10. 29.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첫 공식 회견…“국가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논란

최정환 “이태원 참사, 중대재해법 넘어서는 문제”

기사승인 2022-11-25 06:15:01 <쿠키뉴스>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이태원 압사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적용 불가 (도로, 길거리→공중이용시설 아님)
 - ▶ 빅데이터 · AI 등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재난방지시스템 고도화

cf. 세월호 참사 발생 연도(2014) 건설 사망사고 감소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현황 및 법률적

쟁점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위반 사건 현황

- 2022. 50인(억) 이상 중대산업재해 현황
 - 총 173건, 건설업 72건, 제조업 65건, 기타업종 36건
 - => 수사 진행한 173건 중 중처법위반으로 64건 입건
(산안법위반 입건 99건)
 - 24건 기소의견 송치
 - 개인질병, 교통사고, 자살 등 법위반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내사종결(140여건)
- 2022.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192건(209명)
건설업 80건(89명), 제조업 74건(81명), 기타업종 38건(39명)
(10. 23.기준)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재판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 야누스와 같은 두 얼굴의 딜레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예방규정>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처벌규정>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가.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등" 개념의 불명확 및 불확정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A)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B)"

Q

대표이사 외에 안전관리 전담임원(CSO)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해석]

√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ex. 공동 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 [최협의설]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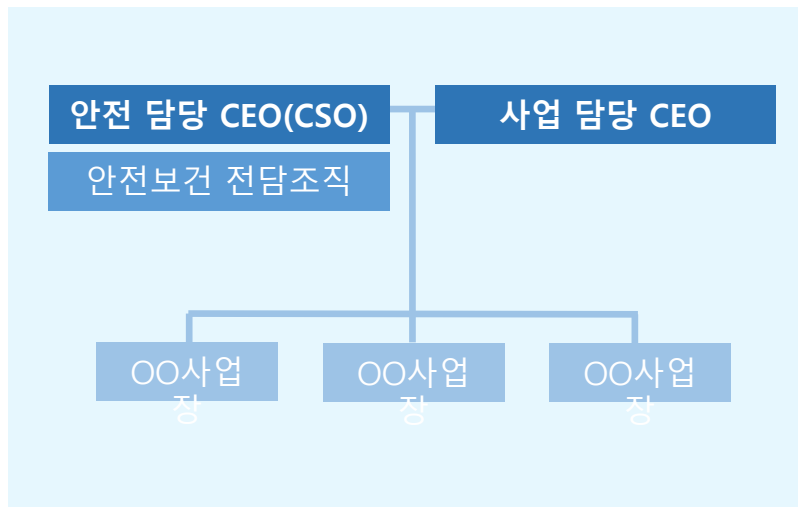
👉 **신분법**

2022. 1. FAQ)

(2021. 고용노동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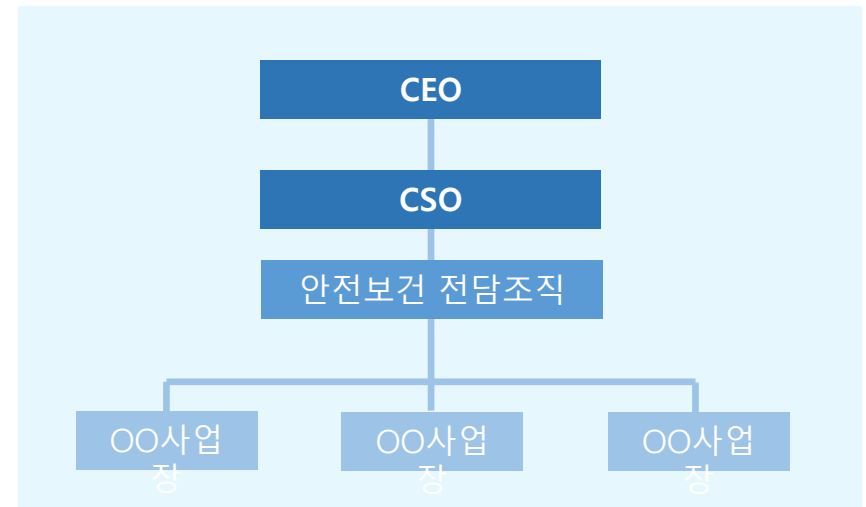
안전보건 전담조직 예시

➤ 조직 구조 개선 방안 예시1(사기업)



- ✓ 안전보건전담 대표이사를 두어, 각자 대표이사로 하는 방안(?)

➤ 조직 구조 개선 방안 예시2(사기업)



- ✓ 안전보건책임자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는 방안

현대건설 대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중 현대건설 윤 대표를 포함한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체교육(여러 사람에게 집단으로 실시하는 교육) 각 6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인 안전관리 본부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 대표 일정상의 이유로 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수강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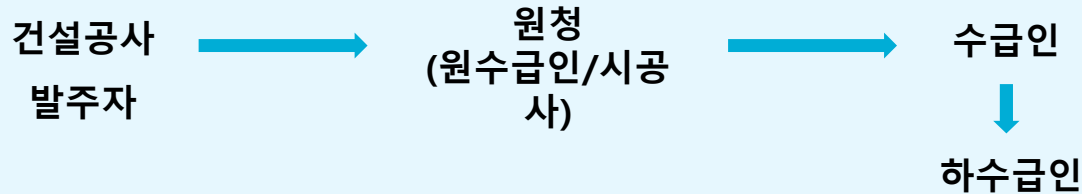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구리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했다.

(2022.6.29. 디지털타임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적 쟁점

나. 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의 불확정



Q

1. 건설공사 발주자가 법 제5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x)

2.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해석되는 경우, 법 제5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발주 등

3. 원청(시공사)가 도급인 지위에 있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어 제5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할 경우, 하청업체(수급인 등)도 제4조의 의무주체인지?

☞ '입법취지(위험의 외주화로 책임 전가 방지)'를 생각해야!

☞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265 판결)

제조업체 공장의 지붕보수 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 추락사고

(울산지법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 수급인 근로자가 공장 지붕에 적재된 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 사고원인 : 발판, 추락방호망 등 미설치

√ 판결(일부 무죄)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

▶ 판단기준: 발주자 사업(약품제조업)과 무관, 지붕에 특수한 위험요소 없음, 전문성을 갖춘 수급인이 안전조치

부족 이행 능력 보유 등 ⇒ 산안법이 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 중처법 제5조 단서 해당 여부: 미해당

▶ 공간적으로 구분된 장소에서 발주자의 사업(작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거의 없고, 발주자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발주 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시설, 장소 등을 점유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어 통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중처법

상 의무이행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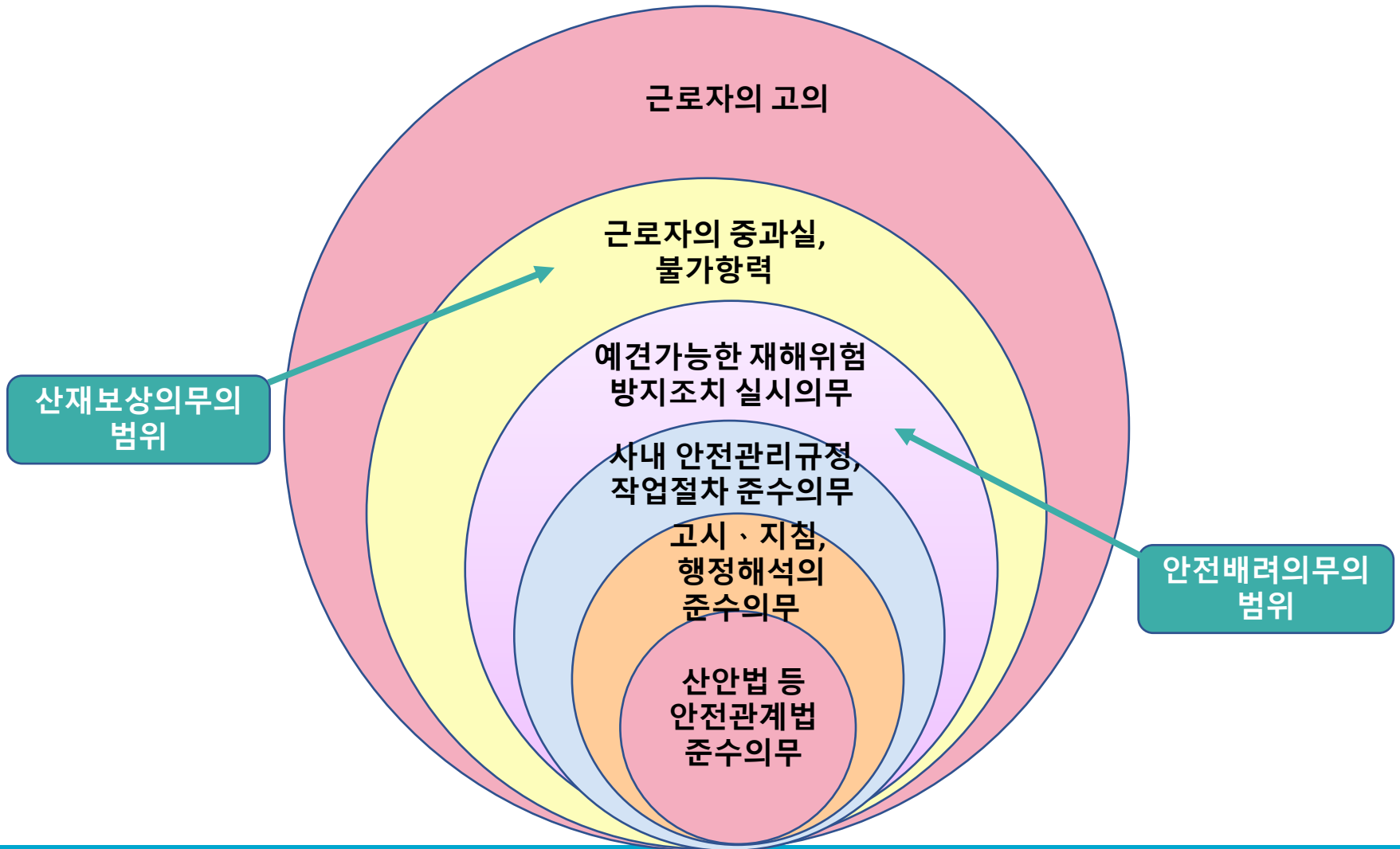
이해당사자간 책임공방 증가예상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지배 · 운영 ·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주자, 원청, 하청 중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이 곤란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상호 책임 전가 예상(법원 판례 형성시까지)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등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및 산재보상의무의 범위



산안법(안전보건규칙)상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부과 -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건 판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 구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입법 목적, 안전보건 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의 성격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적론적 확장해석)
-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특히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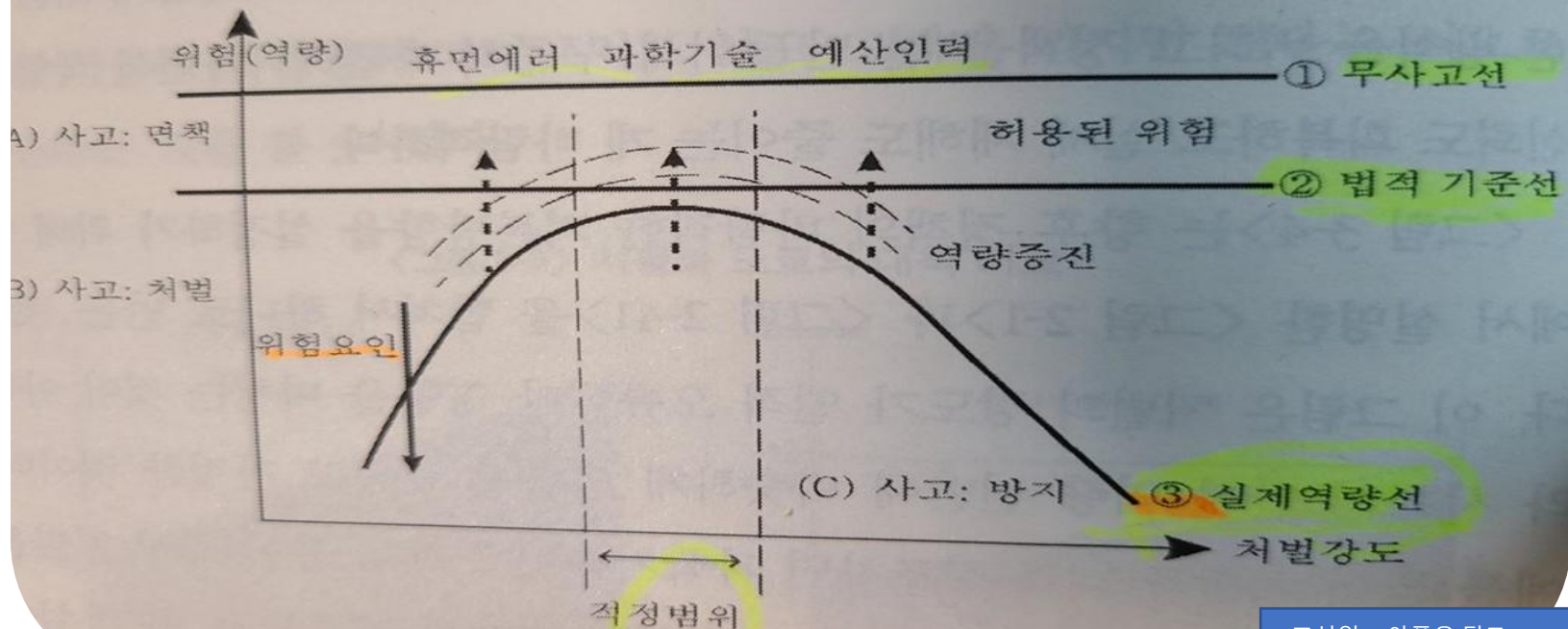
(최저기준 → 적정기준)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수준

- 걱정 수준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SFARP)”
 - 법 제4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
 - 판단 기준
 - √ 작은 위험에도 더 큰 안전조치를 취했느냐?
 - √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느냐?
- ex. 서류작성 여부 + 점검의 적절성 등 '실질적' 이행 여부

기업의 적절한 안전역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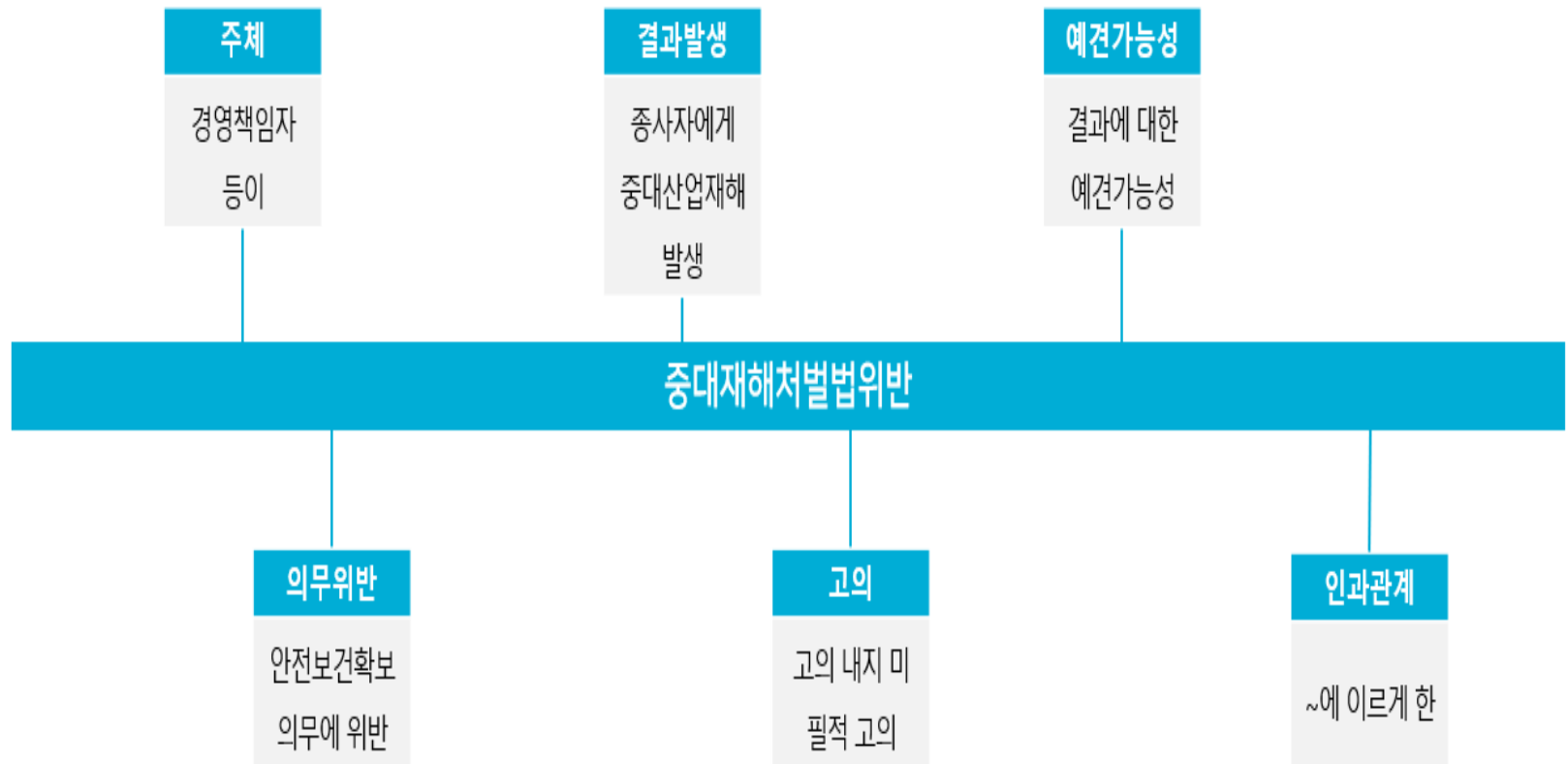
<그림 3-4> 기본방향의 설정



<조성일, '아픔을 딛고
안전사회로', 북랩, 186 쪽>

라. 예견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성요건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상죄’ (제6조, 제10조)

◆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기한 기본행위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발생

√ 고의(미필적 고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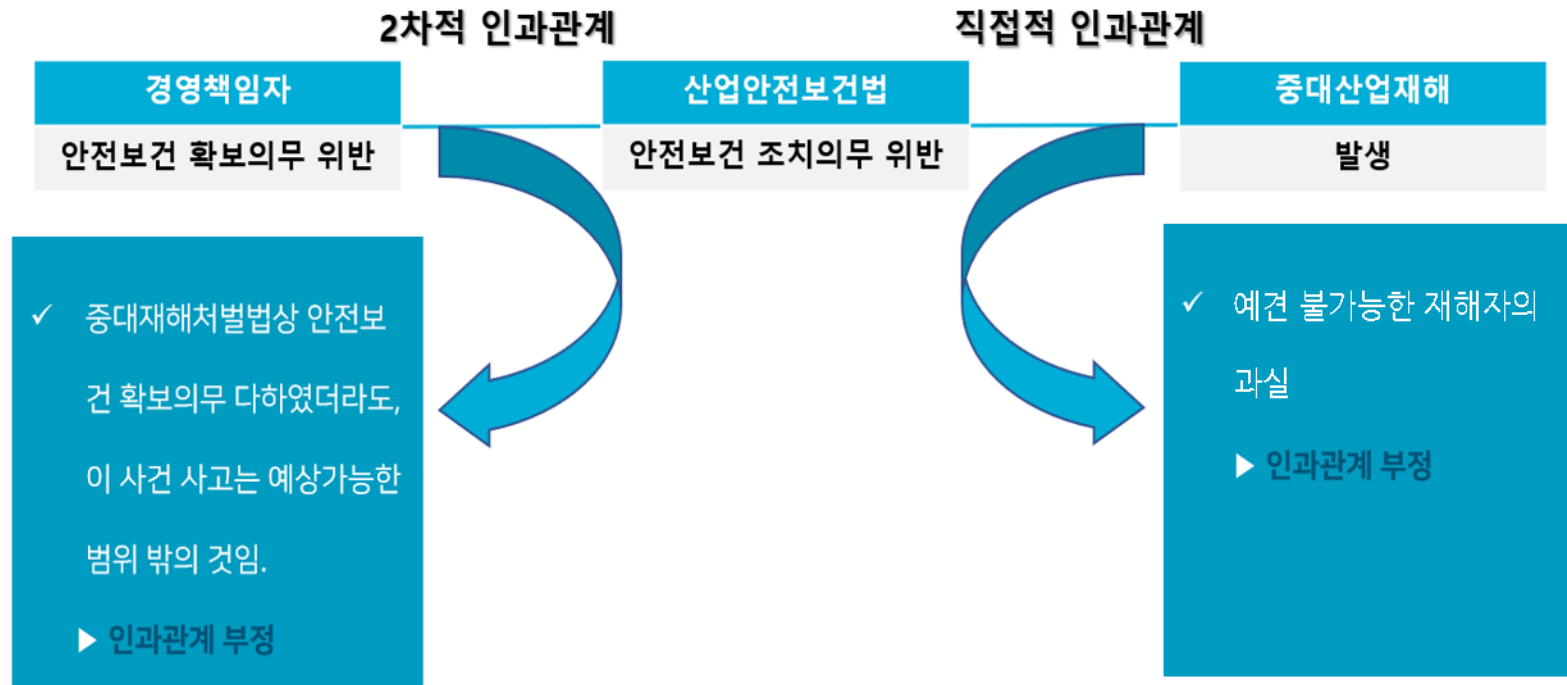
- 시행령상 의무 불이행 상태에서 작업 지시(ex. 돌관작업 지시) / 방치, 묵인(용인)
- 현장에서의 개별적인 안전조치 불이행을 인식 못하였더라도, 미흡한 관리(보고)체계 등 구조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 인명피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 ① 통상 과실 ② 중과실(업무상 과실) ③ 추가적 위험요소로 인해 결과발생이 분명히 예견 (ex.재해 반복, 시정명령 위반, 전문가 의견 무시, 위험성 평가 낙제점, 최소한의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 등)

★ 유의점 : 규범적으로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면책 가능

마. 다단계적 인과관계



단계적 인과관계

√ 진정부작위범의 (상당)인과관계

▶ 부작용과 중대재해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단절:

(1) 의무위반과 내용과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

ex.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주차장 천장의 전등 교체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사한 경우, 사인은 '감전'인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부정 (의정부지법 2010노2384 판결)

(1-1)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근로자 등의 중과실,

제3자의 고의·(과실)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상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대법원 2014도6206 판결 등)

(2) 의무이행(작위) 했더라도 결과 발생(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경우)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사고발생	인과관계
1유형	○	○	○	x
2유형	○(?)	x	○	△
3유형	x	○	○	△(↑)
4유형	x	x	○	○(↑)

※ 법률 초안 : 인과관계 추정

다단계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제1유형 : 사실상 **만전(萬全)의무**

- 위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부, 2022. 1. FAQ)

■ 제2유형 :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상 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음.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 (고용부, 2022. 1. FAQ)

☞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 감독을 통해 지시가 이행되도록 관철할 의무 있음

■ 제3유형 : 중처법상 의무이행 했더라도 결과발생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 단절’ 주장 가능

- 그러나,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없는 경우(예, 안전보건기준 규칙 준수)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이러한 종업원 등의 업무상 과실이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경험칙상 인정될 경우, (상당)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있음

■ 제4유형 : 인과관계 인정가능성 높음

- 위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 (고용부, 2022. 1. FAQ)

다단계적 인과관계 관련 유의점

√ 시행령상 의무 관련 일부 규정은 인과관계 유무 논란 여지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시행령 4조 1호)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시행(시행령 4조 6호)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위험요인(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던 경우 : 다만, 육안점검, 전문기관 위탁점검 등으로 확인 가능했을 경우
-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절차 마련(시행령 4조 7호)했음에도,

중대재해 발생 : 다만, 사고발생 후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직접적 · 구체적인 (중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은 인과관계 인정 가능

ex. 산안법상 필수적인 안전관리자 등 미배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x), 종사자 의견 청취(x), 재발방지 대책(x) 등

바. 기대가능성

√(행위자에 대한) 기대가능성 없음 주장 => 책임조각

* (양심적) 평균인 표준설

ex. 계단·탁자 위처럼 낮은 높이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작업에도 비계 조립, 안전방망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에 반함 (울산지법 2014노218 판결)

☞ 낮은 곳에서 경미한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조각

[시사점]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광범위한 의무 중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내용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조각 주장 검토

○ 수사 및 처벌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

- √ 예측가능하고 예방가능성 있는 중대재해 발생은 처벌대상이다
- √ 상당수 중대재해는 **위험의 방치와 규정(규칙) 미준수의 묵인에** 기인
 - 방치와 묵인이 ① 위험관리체계의 실패인지, ② 관리시스템의 미비인지, ③ 조직구조(조직문화) 상의 결함 등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
- √ (CEO 등 상대로)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방치되었는지 등 수사
- √ (기업 상대로) ▲ 안전에 대한 무관심 ▲ 위험[‘아차사고(near misses)']의 방치 ▲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 ☞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등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다른 중대한 의무위반이 없는 한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8월 고용부 기획감독 중점사항

- 대상 :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업장
- 주요 감독사항
 -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시행령 제4조 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④ 중대산업재 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위탁점검 가능)**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 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등 집중점검

사고 사업장 점검사례

◆ A건설 ①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타워크레인 작업상 추락위험을 사전제거하지 못한 사례로, 위험성 평가 등 추락사고

예방절차(×)

◆ B건설 ① 하역작업장소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② 중량물 취급작업 작성계획서 미작성

⇒ 타현장 중대재해 발생 1개월 후 동종 유사 재발 사례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미흡

◆ C공업 ① 검사·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② 기계 작동 가능성 있으나, 작업지휘자 미배치

⇒ 끼임사고 위험요인 개선 위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성 인지하고도 이를 게을리 함

(☞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보고 · 점검체계 확립 중요

현장(하청 포함)→CSO→CEO 에 이르는 '양방향 안전보건 정보파이프 라인' 구축
현장(하청 포함)←CSO←CEO

-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ex.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에 필요한 조치, 안전 인력 · 예산 편성 필요성 등)
※ 시행령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2022. 1. FAQ]
- "이행 안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보고받고, 추가 조치 지시
(+조치여부 확인)
- "전부 잘 이행되고 있다"는 보고 시, 내외부 교차 점검(감사) 필요
 - ▶ "상하 · 좌우 360도 소통"



3.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가. 중대산업재해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2022. 1. 29.)

√ 양주사업소 채석장 하부에서 골재채취 작업중 토사가 무너져 3명(천공기, 굴착기 운전자) 매몰 사망

▶ 사고원인(추정) : 토석 등 붕괴 위험방지(방호망 설치, 굴착면 기울기 준수, 작업계획서 실시 등) 미
조치

√ 수사진행 상황

▶ 경찰 : 현장소장, 안전과장, 폭파담당자, 작업반장 등 입건 수사 중

▶ 고용노동부 : 대표이사를 중처법위반으로 최초 입건,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를 산안법위반 수사중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미구축(x), 안전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리상 조치(x)

※ **경영책임자등의 (2차적) 인과관계 입증에 관건**

- 보호망 미설치 등 현장에서의 미조치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리감독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두성산업(1호 기소 사건)

√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고(질병 16명)

▶ 2021. 9. ~ 2022. 2.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중독 질병자(독성간염) 16명 발생

▶ 사고원인: 유해물질 성분 점검 소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 대표이사 : 중처법위반 및 산안법위반 기소(6.27)

√ 시사점

▶ 보건관리자 등 역할 중요

- 기계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동종업계 우수사례, 산안법보건규칙 429조, 454조, 500조)

▶ 작업환경측정 실질화 ➡ 유해·위험요인 확인 · 개선 업무절차 마련 + 예산 편성 · 집행 등 필요한 조치

-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관련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중요

두성산업 (1호 기소 사건)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지방검찰청 2022. 6. 27.(월)	보 도 자 료 2022. 6. 27.(월)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범 최초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관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유형, 수사관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 형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공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2022. 6. 24.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됨	

- 장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환)는 C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장원 A사, 김해 B사 근로자 총 29명이 '22. 2.~3. 연달아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였음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최초로 기소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엄정히 살펴 혐의유무를 판단한 결과,
 -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 B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유성케미칼

세척제 제조업체

두성산업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43세)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감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중처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대흥알엔티 대표(65세)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 인정되어 중처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감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사망사고

- 2022. 2. 23. 10:10경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부를 파쇄하던 중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굴삭기를 덮쳐 운전자 사망
⇒ 사고원인: 사전조사 미실시, 작업계획서(순서와 방법) 미준수 등
- 쟁점
 - 1) 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받은 시공사(K 50%, S 30%, J 20%) 중 **주관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 적용 여부**
 - 철거공사의 경우, 시공 전 **분리발주(구성원사)**되어, 공동수급인 주관사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불인정
 - ※ 금강 노후관 사건(대전지법 2017노200) 참조
 - 2) 하수급인의 실제운영자인 피해자가 직접 굴삭기 조종하여 철거작업 중 사고 당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 재해자(굴삭기 운전자)는 재하수급인 사업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노무제공자의 사망**이므로 산안법상 산업재해
(개정 산안법 제2조 1호) 및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 고용노동부는 **공동수급인 중 분리발주한 구성원사(J종합건설)의 경영책임자를 중처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건설공사 원청 대표이사를 최초 기소한 사례

√ '22.3.29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하도급 근로자 추락사(11m)

▶ 사고 원인 : 고소작업대이탈 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부착설비미설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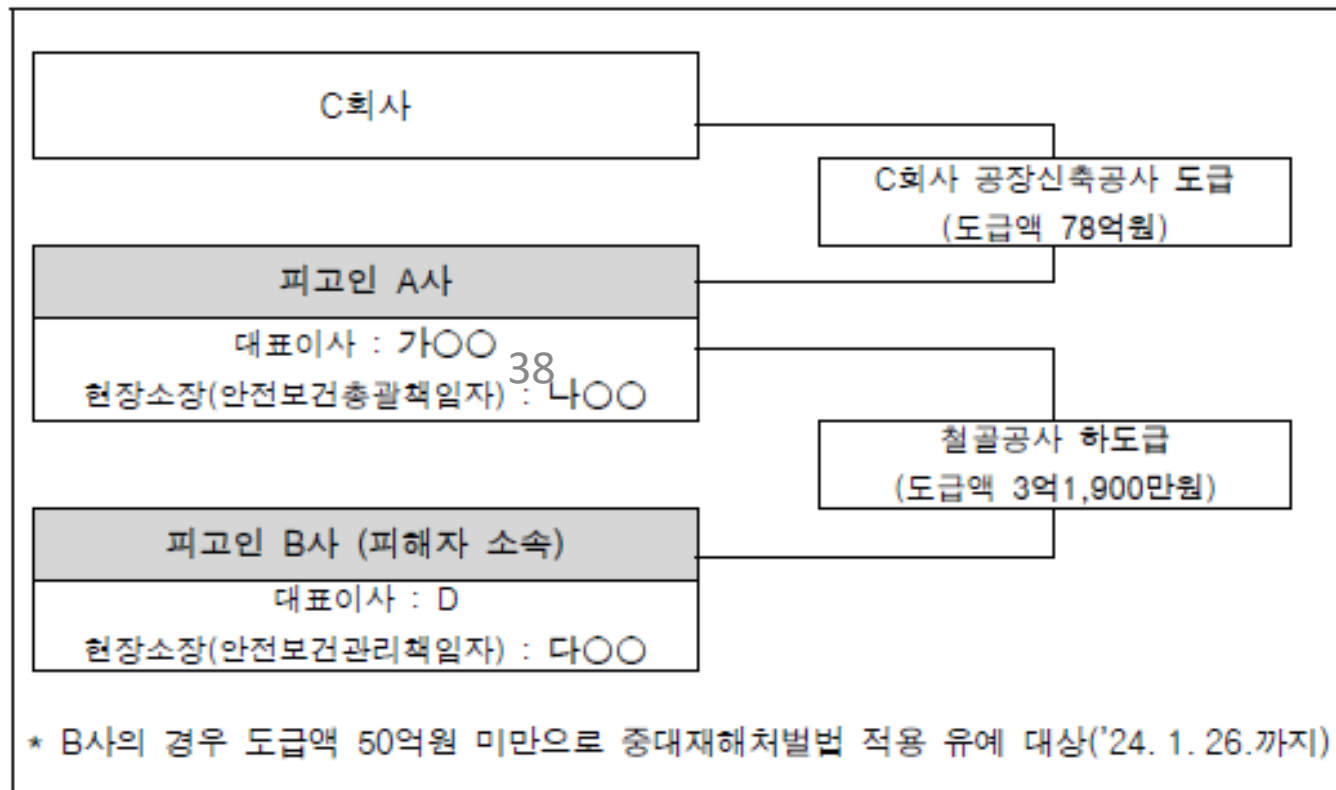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 4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②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절차 마련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④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 시사점

▶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첫 기소,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

□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약



CSO가 있음에도 선박수리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사례

√ '22.2.19 추락 방호망, 안전대부착 등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10m높이 통로에서 추락사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아래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함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②종사자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③하도급업자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기준 마련

√ 시사점

▶ 안전보건담당임원(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등 통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에 대한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사내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사례

√ '22.3.16.철강제조공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 (2014년이후 원청 사업장에 상주) 소속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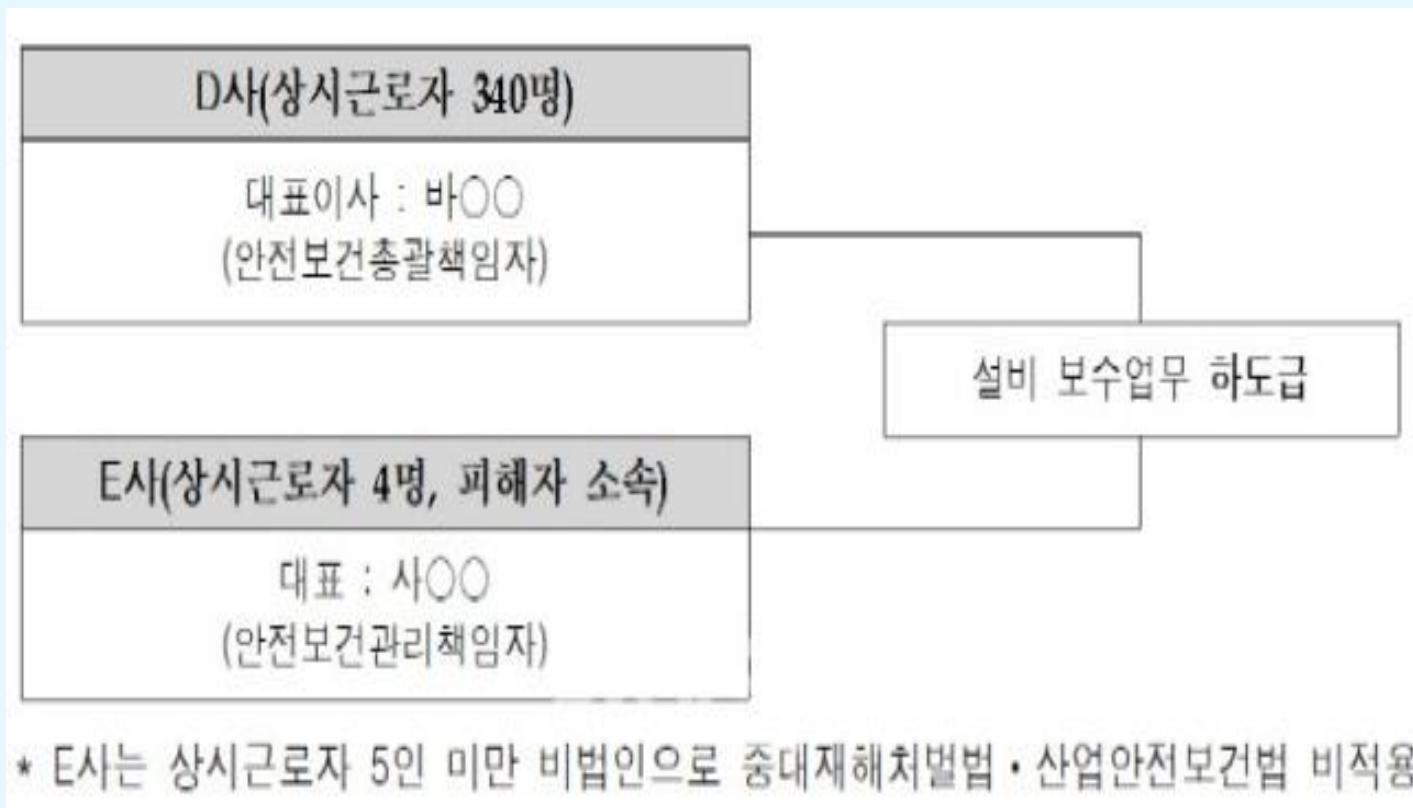
▶ 사고 원인 :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미작성, 방열판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노후화된 섬유벨트를 사용한 과실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아래 2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여 하청소속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함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평가기준 마련 ②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 시사점

▶ 8년째 원청 사업장에 상주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원청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



도급관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메뉴얼

유형	위험성평가 실시관련 역할분담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u>시공사</u>가 위험성평가를 실시 - <u>시공사는 소유 및 임대한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u>, 시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u>하도급한 공정이나 작업등에 대해서는 하도급 산업주가</u> 해당 공정•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 발주자는 시공사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보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 <u>도급인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u>,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u>수급인 근로자와 함께</u> 위험성평가 실시 - <u>수급인은 해당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u>
도급인이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 도급인은 해당 작업에 따라 도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u>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u>

나. 중대시민재해

-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입건 사례 없음
- √ 2022. 4. 27. 순천시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사망한 사건 발생
 - ⇒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여부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가상사례)

- √ 2022. 8. 2. A시 지하차도(터널구간 200미터)를 통과하던 차량 10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 운전자 등 20명 사상(사망 5명, 부상 15명)
 - ▶ 사고원인 : 배수로 일부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배수가 원활히 안됨, 단시간 침수 이후 진입통제조치 미흡 등
- √ A시장에게 중처법 제9조 제2항 적용 여부:
 - ▶ 대상 : 공중이용시설 해당(연장 100미터 이상 지하차도)
 - ▶ 설치상 결함,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 사망
 - ▶ 의무위반의 고의 :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통행하도록 방치
 - ▶ 인과관계 : 여름철 강수량 증가는 경험칙상 예견가능
 - 안전점검 수행, 안전계획 수립·시행했다면 재해 결과 미발생

※ 사업주 : 산업현장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장소에서 안전조치
(산안법 제38조 제3항, 산안보건규칙 제37조), **작업중지**(법 51조, 52조)



4. 민·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4. 민·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대응 주체

가. 경영책임자 등(**CEO**/C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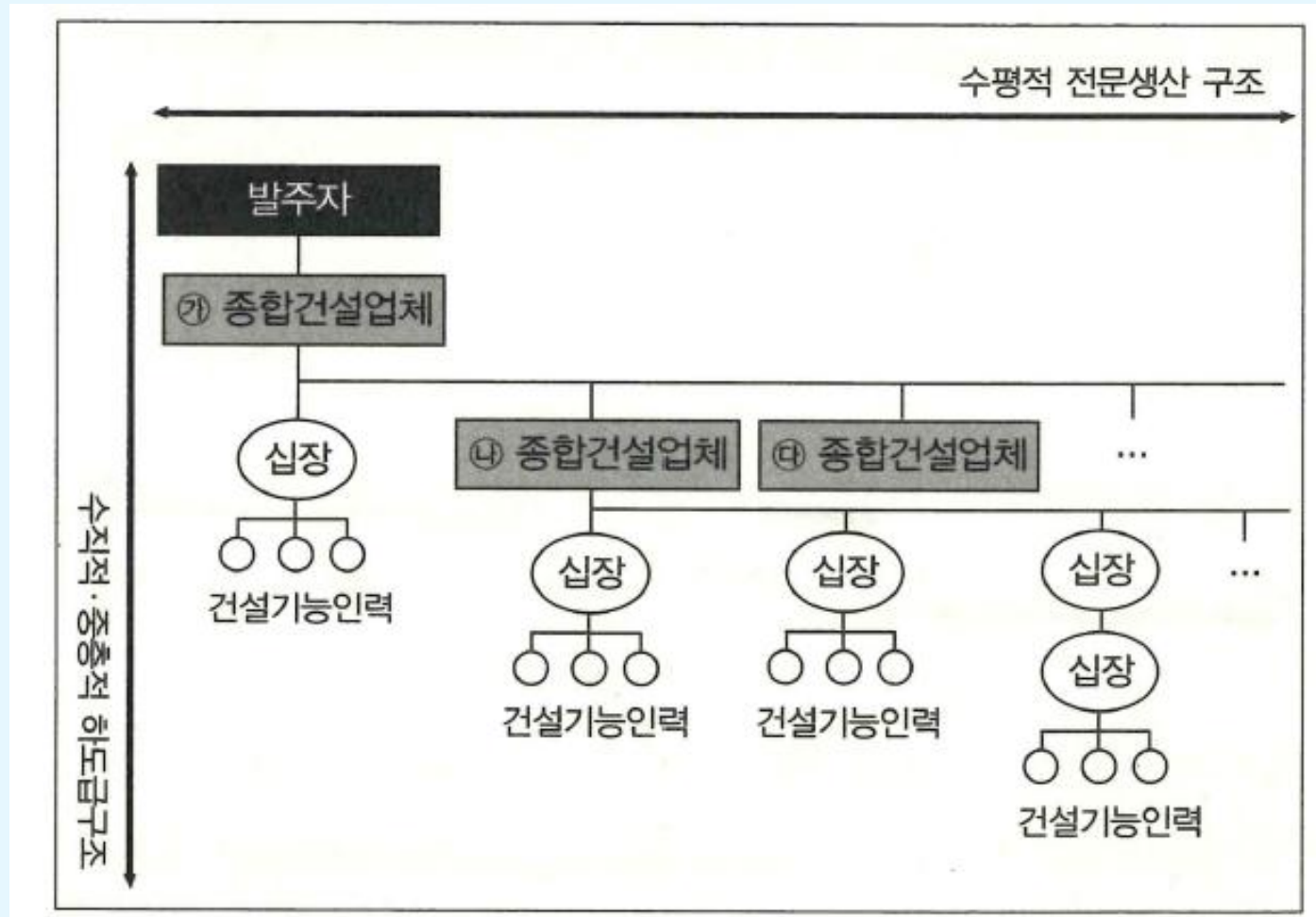
나. 기업 법인

다. 실무담당자

“대표이사 등 경영진 술선수범”

- ▶ 핵심습관(keystone habit)의 실천으로 조직 변화
- ▶ 중형 입법(위하력), ESG 경영 등 국내외 여건 급변
=> “변화하지 않으면 자신(과 조직)에게 큰 손해라고 느낄 때
=> 최고 경영자(CEO) 의지로 안전체계 (확립) 바꿀 수 있음
- ▶ [법 개정의견] v 의무위반(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방효과
v징역 1년이상의 하한형 폐지

◎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감사원 "중대재해 10건 중 1건 무자격자 시공" [MBC뉴스]



22층 잔해 반출 시작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간 건설공사현장 감사(2022. 5. ~ 7.)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감사분야	분야별 감사중점
공사체계 관리·감독 분야	▪ 감리가 공사감리 계획서대로 현장에 상주하는지 ▪ 현장 건설기술인 배치·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콘크리트 품질관리 분야	▪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별도의 물타기를 하지 않는지 ▪ 현장 품질시험을 레미콘 생산업체가 주는 자료로 갈음하는지 ▪ 겨울철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는지
불법하도급 조사 분야	▪ 건설사고현장의 불법하도급 조사가 별도로 이뤄지는지
근로자 안전관리 분야	▪ 사고위험이 큰 비계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건설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통계가 누락되지 않는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토부 후속 조치(예정)

- 1)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및 고발조치(건설법 제95조의 2 등)
- 2) 상주 감리원 중복배치,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고발조치(건설법 제97조)
- 3) 콘크리트 품질시험 이행 여부, 겨울철 강도유지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4)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높이 31미터 미만 비계공사 등
 - 건설(사망)사고 신고(CSI) 누락에 대한 점검 강화(ex.노동부 산재조사표 공동활용)

* 누락사유 :신고제도 미인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 제재대상 확대

- 불법하도급한 자 +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 받은 자”로 확대

2 처벌수위 상향

- 불법하도급으로 건설공사 시공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징벌적 손해배상

-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 하도급 관리의무 불이행의 경우 피해액의 5~10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4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신속한 시장 퇴출

-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구조상 주요 부분 손괴되어 사망사고 발생 시 필요적 등록말소(10년간 등록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 추이 및 동향 예의 주시 필요

ESG 등급 떨어진 중대재해사고 건설사...HDC현산 ·GS건설·DL이앤씨·삼성물산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인 현대산업개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퍼블릭뉴스]

한국ESG기준원이 국내 건설사들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2년도 ESG 등급'을 공개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4일 국내 건설사들의 ESG등급표를 공개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등 5개 건설사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며 지난해보다 ESG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여파로 사회(S)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회부분은 B등급으로 올해 2단계 떨어졌다.
(중략)

이번 등급 하향 조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ESG종합평가에서 최종 C등급 받았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 법 준수에 대한 안전 컴플라이언스(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최고경영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종사자 등 직책별 체크리스트 작성,

- 직무(안전책임) 감사

▶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필요

√ [시행 효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법인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입증

⇒ 민형사 책임 면책·감경 가능(법 제15조 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11조 단서)

관리자 등 실무자 및 협력사 관계자의 주의의무

√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조직의 다른 구성원 및 협력사(하청)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 근거가 됨

(ex.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리자 및 협력사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 [대응방안]

- 전사(全社)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작동

: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성 및 사명감

제고, 평가·관리

-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 시행, *스마트 안전기술,

협력사 안전대회 개최(삼성전자) 등

안전팀의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결과는?

멕시코만 기름 유출사고(2010.) : 영화 '딥워터 호라이즌'



해양 시추선 폭발로 11명 사망, 17명
중상, 400억 상당 손실 사고 발생



'실적 우선주의' > 안전 문화

'경영진 독단' > 안전팀 의견
(안전검사)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도입 배경 및 효과

● 하청 종사자 사망 사고 발생시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됨

(원청 대표이사 등 형사 리스크 증대)

형사리스크 대응방안으로서의 인증제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적격수급인 평가의무 강화

▶ 저희 로펌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를 활용하여 우수

협력업체(하청업체) 관리 가능

√ 인증방식 : 대륙아주 소속 인증심의위원이 총 50~100개 정도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에 인증서 교부

√ 기대 효과

- 원청이 도급을 줄 때마다 수많은 하청업체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 하청업체에서 사고 발생하더라도 인증제 실시했다는 객관적 자료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면책·감경 가능

- 모범적인 원·하청 안전공동체 구축하여 회사 신용도 및 경쟁력 향상

○ 형사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가. 사전 예방단계

-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이행
 -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법률 및 시행령 15개+체크리스트**)를 다하였는가?”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지침, 해설집 등 숙지
 - 특히 **CEO부터 솔선수범**: 경영책임자등이 의무주체!
 - ☑ CEO 등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CSO 신설, 안전전담 조직 등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운영 등
 - ☑ 법적 책임 대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 명확화 및 의무이행 상황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특정 필요
 - ☑ R&R, 매뉴얼, 계약서 등 정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포상·격려 및 징계

나. 수사 및 재판단계

√ 검찰·경찰·고용부의 수사·재판 협력체계 구축

-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구성
 -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 협력
 - 수사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 등 전과정에서
쟁점 및 법리 공유, 중대재해사범 엄정 대응 등
- 검찰 :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 경찰 : 17개 시·도 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확대
- 고용부 :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검사

파견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대응 매뉴얼

- 사업장 사고 부서가 아닌, **기업 본사의 신속대응팀**(안전전담부서+법무실+홍보실)이 초기부터 신속 대처

- 수사단계별(고용부 특사경, 경찰 / 검찰 / 법원 영장재판)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 특히 **수사초기(현장조사, 압수수색)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적극 대응** 필요

- 수사기관(고용부 특사경, 경찰 / 검찰)별로 수사방향이나 법률의 해석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CEO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합리적으로 대응

- A.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대법원

수사기법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 조사 순서 : 통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사

· 사업장 안전담당자(원청 현장소장/하청 관계자) 등 -> CSO -> CEO -> 오너

◆ 다수 인명사고 등 중한 사건 : 구속수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노조 대표, 현장 종사자, 목격자 등 강도 높은 수사 예상

- 사업장과 **본사** 압수수색

※ 압수수색(구속)영장 집행 시 : 영장제시 + **사본 교부** (형소법 개정)

※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 참여권(대법원 2011모1839) -> 전자정보 압수 시 기업비밀 침해 등 우려

- **조사 내용** : 사고발생경위 / CEO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 및 이행실태

☞ 따라서, 안전·보건 목표 수립 ~ 유해·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노조 대표 등 참여 필요,

☞ 초동수사 시 노조원(노조 대표) 등 종사자, CSO 등 진술의 중요성 -> CEO나 원청 본사에 책임 전가 가능성

재판(구속전 피의자 심문 포함) 단계 매뉴얼

- 중대재해 사건은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 관할
(개정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아목)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 관철**
-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
- 검찰 구형 및 법원 양형기준 강화 예상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 (선례가 될 판례 형성 필요)

5. 결론 : 처벌보다는 “예방”이 주목적

- 법 제1조(목적)

‘ ---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 안전 양극화

-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필요**(법 제16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증액 등
- **국회 환노위의 감시기능** 강화 필요 (ex. 매일경제 기사)

[VIEW POINT] 중대재해법 후속보고 한달째 뭇간 국회 환노위

05

안전은 종합예술 : 오케스트라 협연!

✓ 중대재해 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행은 원·하청 CEO 및 중간 관리자, 종사자, 노조 등 **모든 참여주체가 이뤄야 할 공동 과제**

※ 중처법 :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 산안법 : 위반행위자, 사업주 / 형법(업무치사상죄) :

과실책임에 관계되는 자

▶ 회사의 모든 계층과 부서(협력업체 포함)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설정 필요

▶ "규제와 자율"의 조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고용부)

✓ 발주자, 감리자, 설계사, 시공사(원, 하청)가 각자의 의무 수행하여 이행해야 달성

- 특히 발주자는 **적정 설계기간, 비용 보장** / 시공사에 **적정한 공사기간, 공사비**(특히 산안보건관리비) 보장 필요

CONTACT

김영규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2-3016-8723
ykkim2@draju.com

DR & AJU LLC

We are delighted at the prospects of being able to provide unparalleled legal advice to you.

At DR & AJU, one of our core values is to work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client's operation. We make sure we understand your business needs, risks and opportunities and then provide strategies tailored for success in the face of complex legal and commercial issues. By doing so, we ensure that our expertise benefits your commercial and legal interests.

We are one of Korea's top seven firms with 218 legal experts, including 15 foreign-qualified lawyer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handling complianc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in various sectors. We represent Korean and multinational conglomerates in Energy/Infra, M&A, finance, banking, construction, real estate, cosmetics, pharmaceuticals, logistics, rehabilitation, bankruptcy and various other industrie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rust that the following will further instill confidence in our ability.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 - 16층
T : 02)563-2900 H : www.draju.com